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(강경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4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30.

발 의 자 : 강경숙 · 황운하 · 차규근
이해민 · 허성무 · 박은정
김준형 · 전용기 · 신장식
백승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, 측정단위 및 수입예상액 산정방법 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,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·촉진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의 법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부금에 대한 건전재정은

영에 대한 자체노력을 평가하고,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2 신설).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조의2(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)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·촉진하기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교육행정기관별로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반영항목,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8조의2(건전재정운영을 위한</u> <u>자체노력 반영) ① 교육부장관</u> <u>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</u> <u>정운영을 유도·촉진하기 위하</u> <u>여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</u> <u>수입액을 산정함에 있어 지방</u> <u>교육행정기관별로 건전재정운</u> <u>영을 위한 자체노력의 정도를</u> <u>반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행정</u> <u>기관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</u> <u>영하기 위한 반영항목, 측정단</u> <u>위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</u> <u>로 정한다.</u></p>